

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20. 9. 23.(수) 10:33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 원 장
김 현 부위원장
김효재 상임위원
김창룡 상임위원
안형환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2020년도 제5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(2020-51-235)

- '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'에 대해 차중호 방송지원정책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(주)현대에이치씨엔 분할 변경허가에 다음과 같이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

< 다 음 >

조건 수정

- 신설법인 (주)현대에이치씨엔은 존속법인 (주)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하여야 한다. 또한 신설법인 (주)현대에이치씨엔은 매년 존속법인 (주)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,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존속법인 (주)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설법인 (주)현대에이치씨엔의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이 조건의 효력은 당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 따른다.

※ 수정사항 : 밑줄 표시

권고사항

신설법인 (주)현대에이치씨엔은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(주)현대에이치씨엔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
나. 「방송법」 일부개정에 관한 건 (2020-51-236)

- ‘「방송법」 일부개정에 관한 건’에 대해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협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협찬과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및 필수적 협찬고지 사항을 명시하는 등 「방송법」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

7] 보고사항

가.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

- ‘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한 4개 법인(네이버, 카카오, 비바리퍼블리카, 한국무역정보통신)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시행령, 고시에 따라 지정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접수함

나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

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

○ ‘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’ 및 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’ 등 2건의 보고사항에 대해 병합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한 후 김영주 인터넷 윤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및 「정보통신망법 시행령」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(7.27~9.6)를 실시하여,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
※ 개정안 주요내용
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: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적 차단의무는 삭제하되 불법 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유형화 등
-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: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자 구체화, 유통방지책임자 교육시간을 연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○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18)